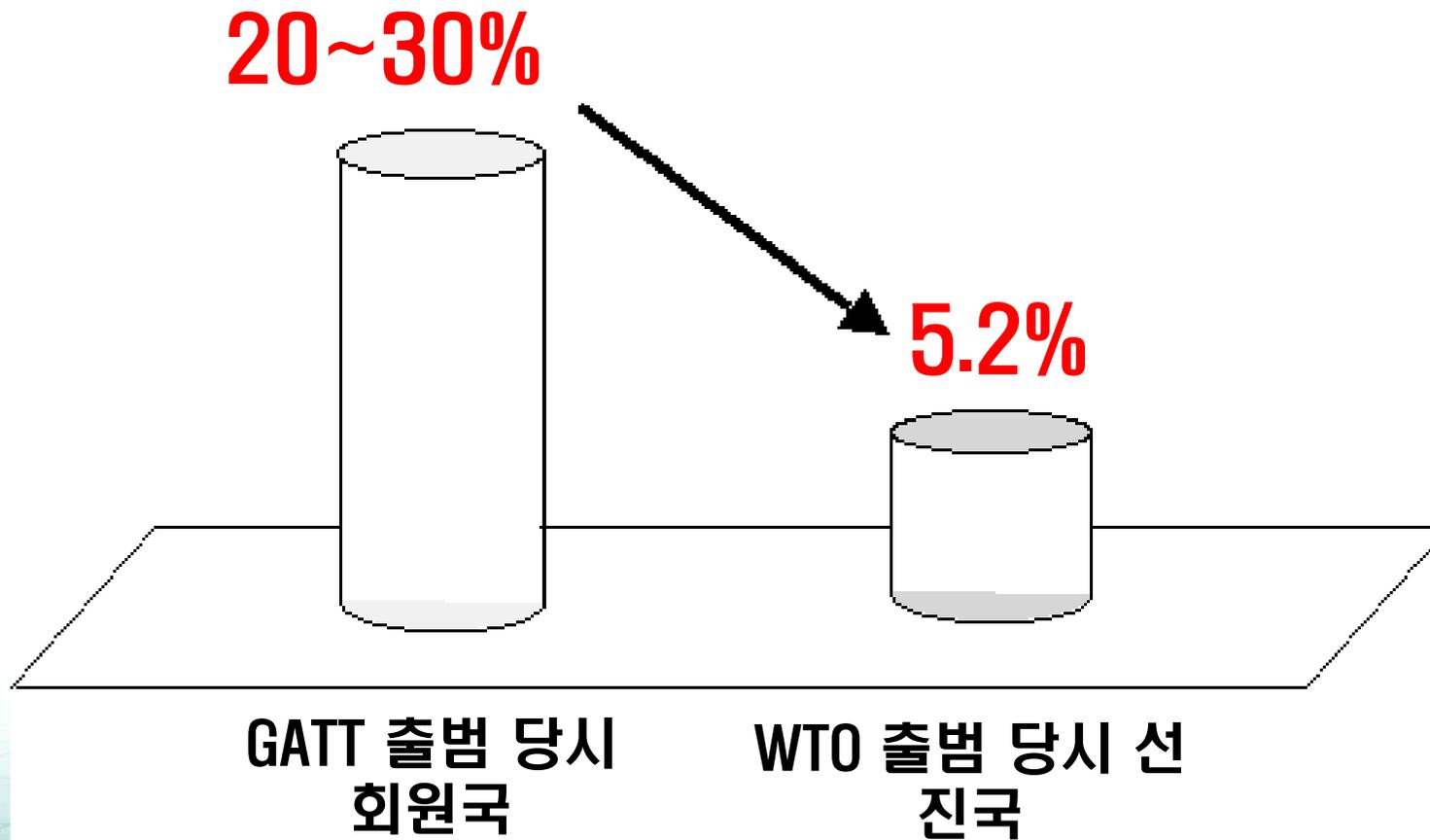


세계 교역체제와 우리의 선택

2012.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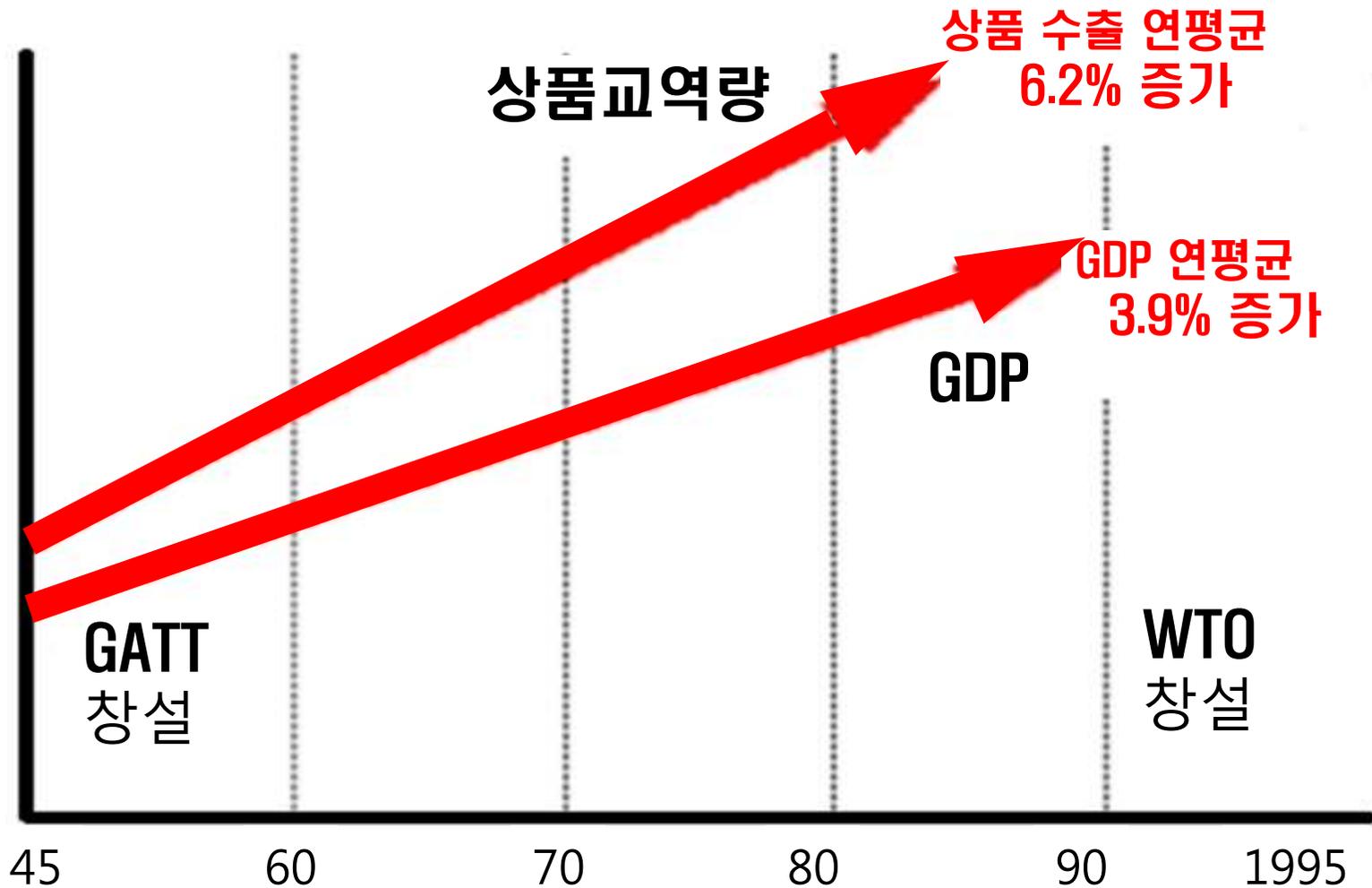
1. GATT 체제의 성과

- 관세(양허관세)인하 : 20~30%(GATT 출범(47)) → 5.2%(WTO 출범(95))



2. GATT 체제의 성과

□ 성장에 기여 : 상품교역량 증가 ⇒ GDP 증가



3. GATT 체제하의 협상 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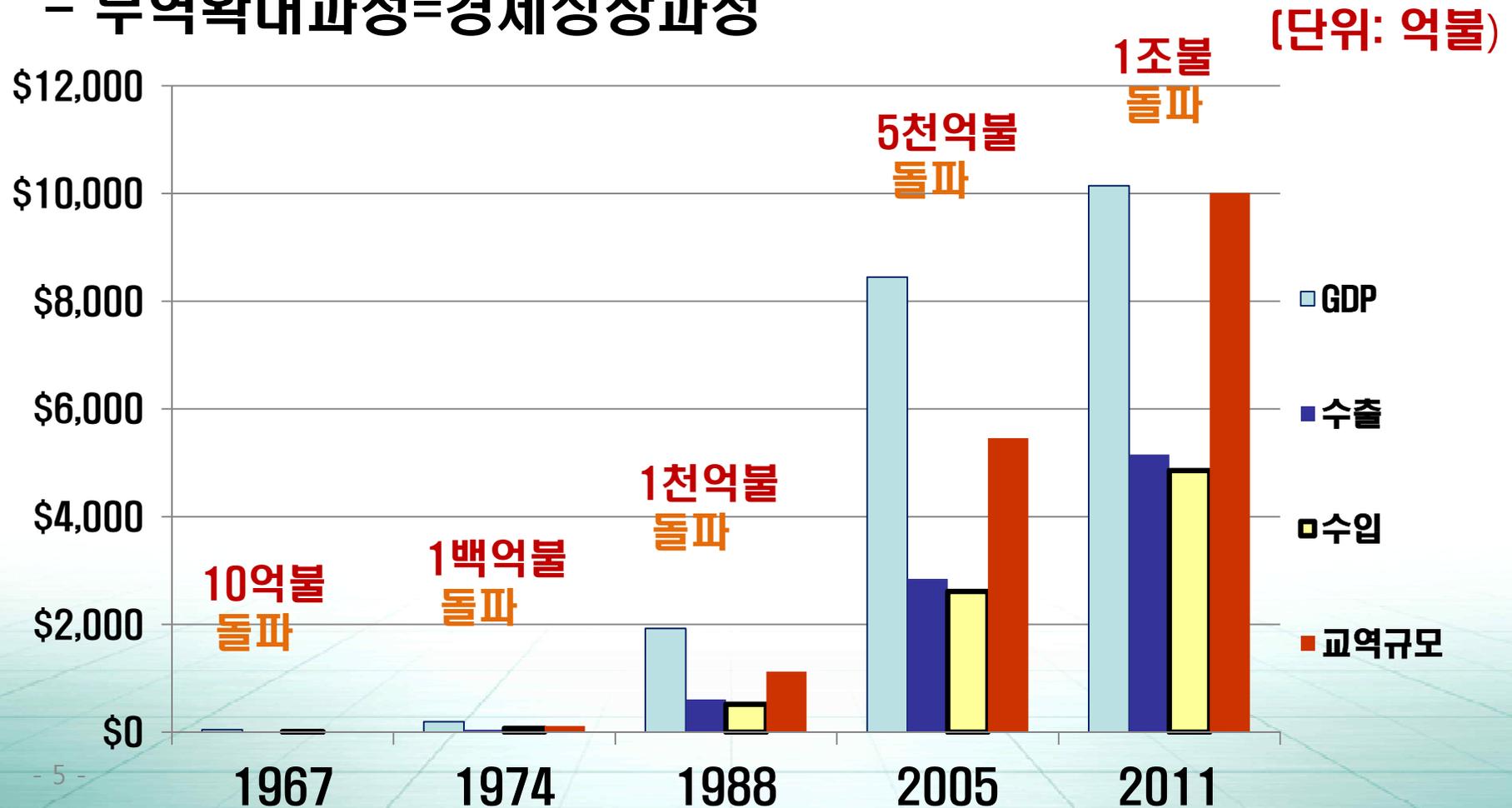
□ 상품관세인하 등을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추진

연 도	명 칭	협 상 주 제	참여국
1947	제네바	관세	23개국
1949	양시	관세	13개국
1951	토르퀘이	관세	38개국
1956	제네바	관세	26개국
1960~61	딜론라운드	관세	26개국
1964~67	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조치	62개국
1973~79	도쿄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 협정	102개국
1986~94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WTO 창설 등	123개국
WTO (2005~)			153개국

4. 무역과 우리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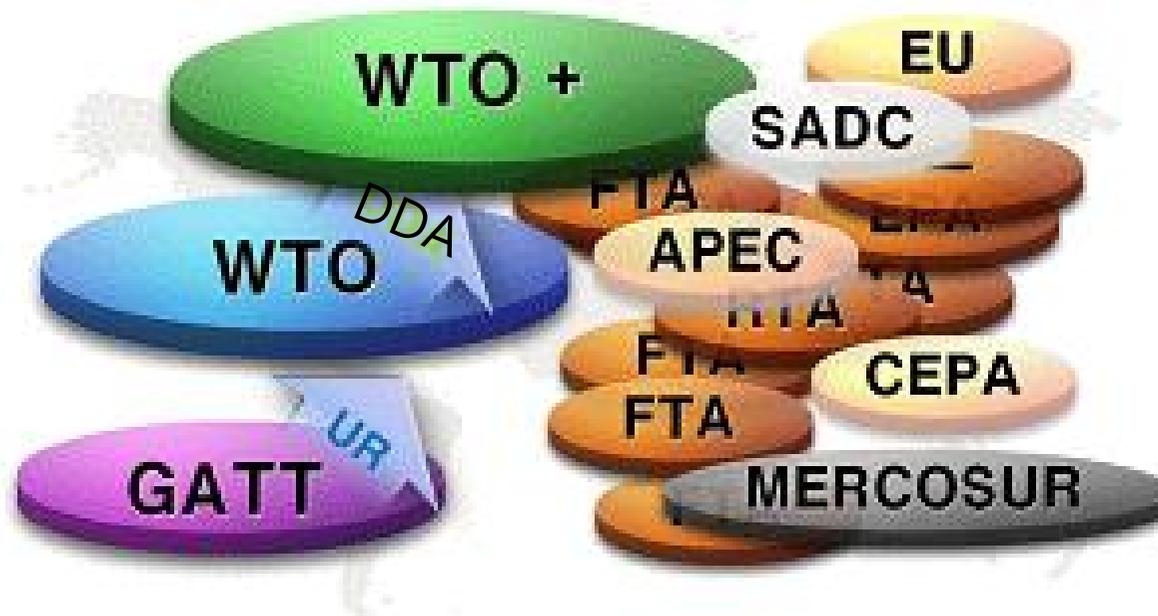
□ 교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중요성

- 경제성장의 기반
- 무역확대과정=경제성장과정



5.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FTA]

- 세계무역체제는 GATT/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이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



6. FTA란 무엇인가?

□ WTO

- 비차별 원칙
 - 최혜국대우(MFN : Most-Favored-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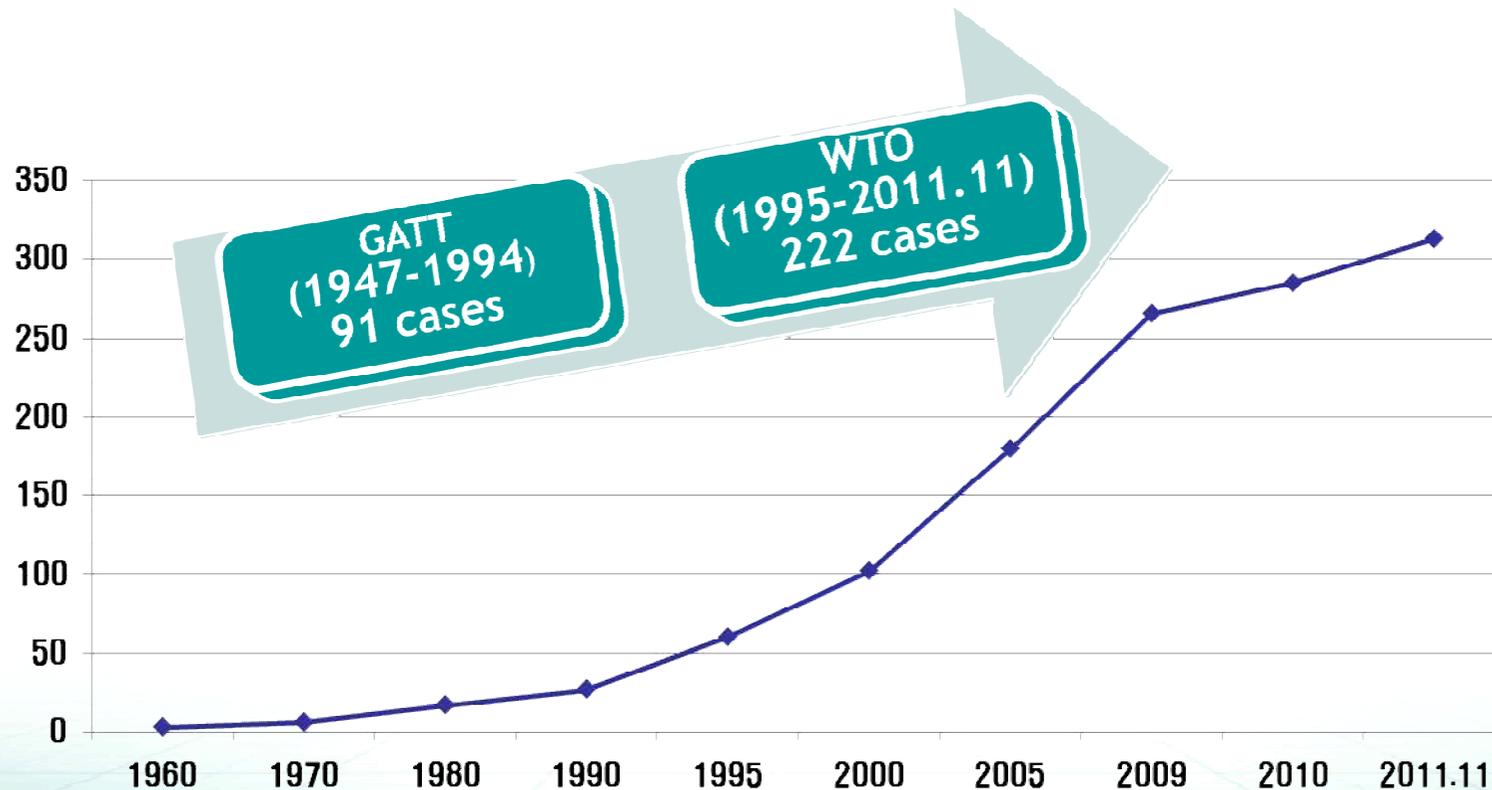
□ FTA

- MFN 원칙의 예외 : GATT 제24조
 -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 “합리적인 기간 이내(within reasonable length of time)”
 - 역외국가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도입 금지

7. 최근 FTA 증가추세

□ 2011년 11월 현재, WTO에 통보된 FTA는 모두 313건

※ GATT 체제하(1947~94) 91건 vs. WTO 체제하(1995~2011.11) 222건



8. 우리의 FTA 추진현황

● FTA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 1995년 WTO 출범

→ 2001 DDA 협상 개시, 타결 난항

□ 우리 경쟁국들은 FTA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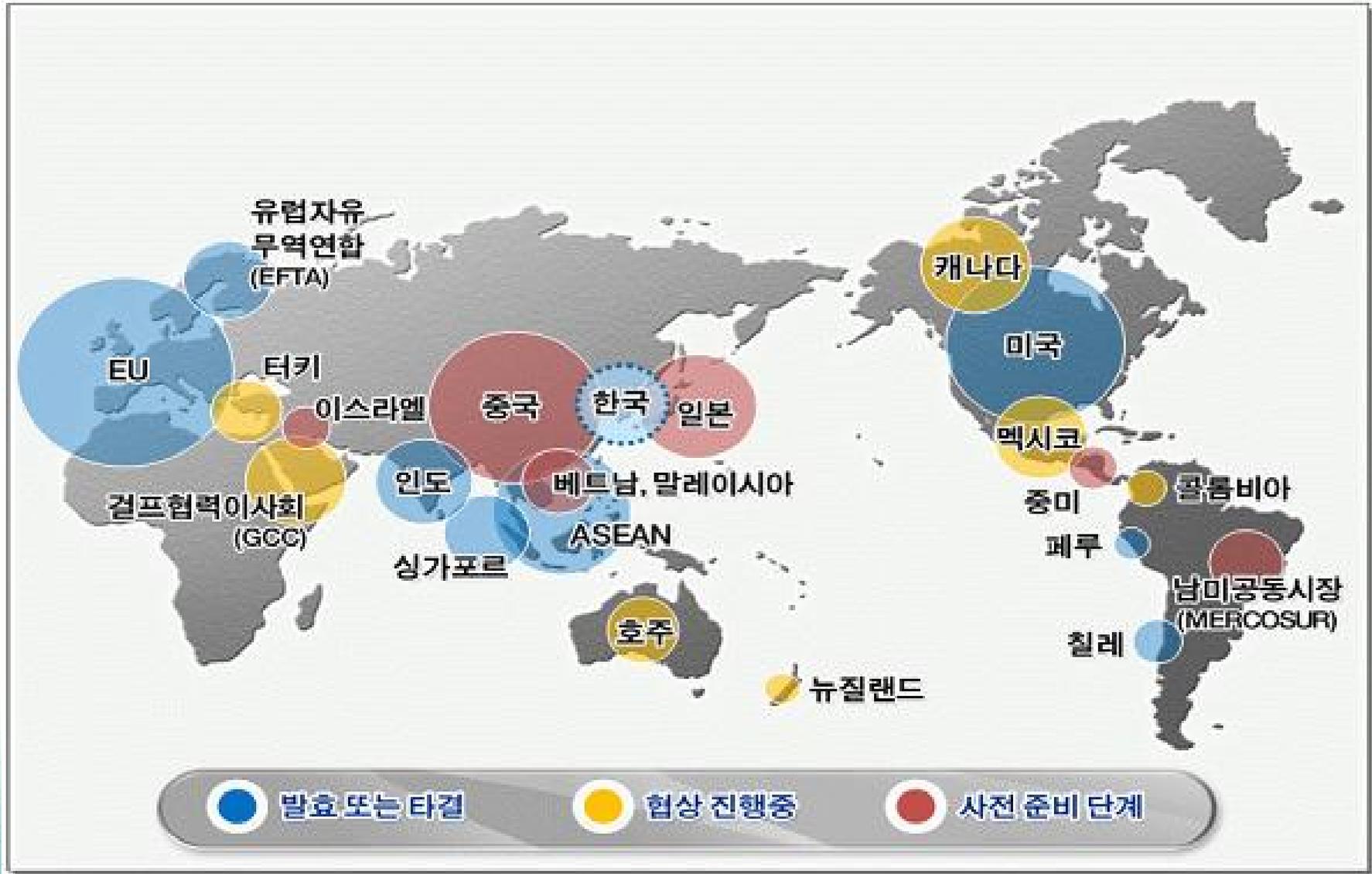
→ 세계 총교역중 FTA비중이 약 50%

→ 우리는 FTA 비중이 25%

□ FTA는 맞춤형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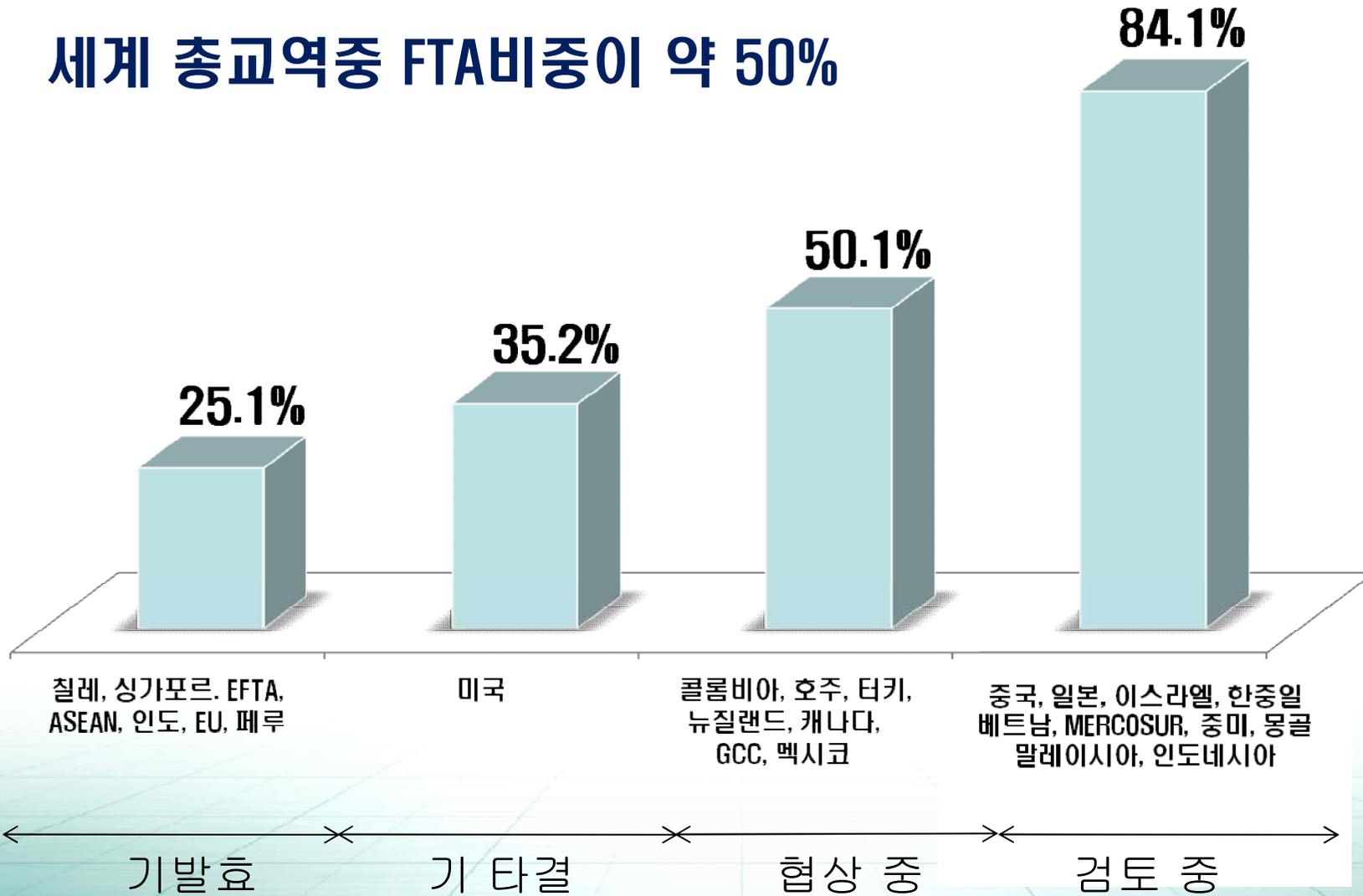
→ 우리 경쟁력 수준에 따라 개방수준 협상 가능

9. 우리의 FTA 추진현황



10. 우리의 FTA 특혜무역 비중

세계 총교역중 FTA비중이 약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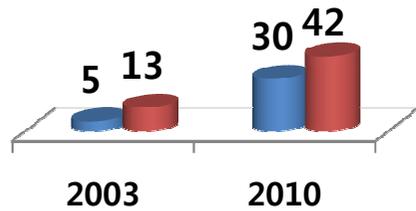
(2010년 교역액 기준)

11.기발효 FTA의 수출입 증가 효과

■ 수출 ■ 수입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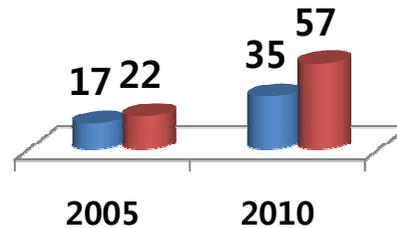
칠레

수출 462% ↑
수입 2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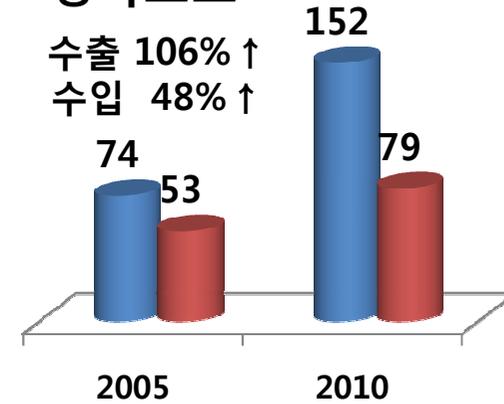
EFTA

수출 103% ↑
수입 1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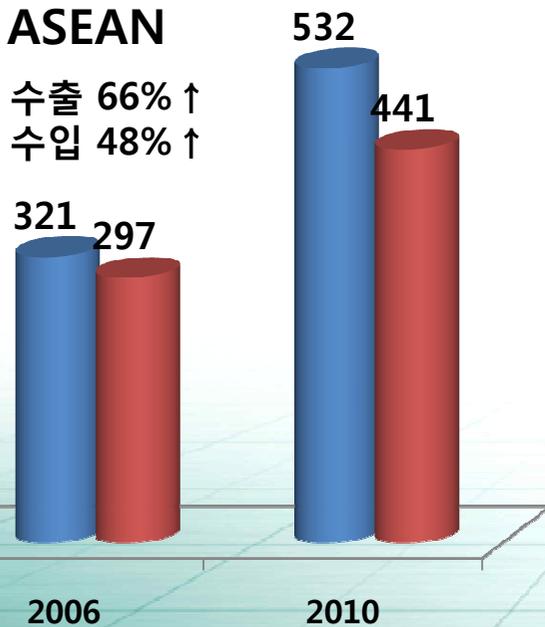
싱가포르

수출 106% ↑
수입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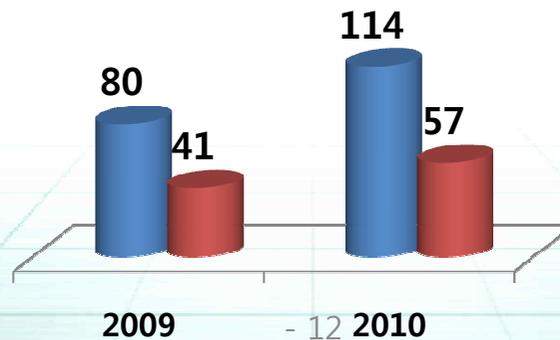
ASEAN

수출 66% ↑
수입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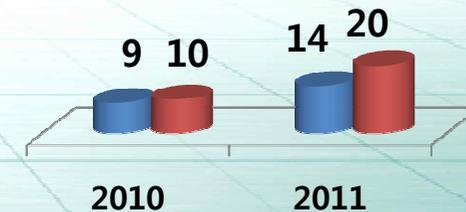
인도

수출 43% ↑
수입 37% ↑



페루

수출 56% ↑
수입 100% ↑



11-1. 기체결 FTA의 효과

 교역 증가 : 전세계 교역증가율의 1.5배 수준

구 분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교역 증가율 (%)
FTA 발효국가 증가율	발효 전 (3년평균)	12.5	11.4	11.9
	발효 후 (연평균)	39.1	27.4	31.3
여타 국가 전체	2003~2010	18.4	21.2	19.8

12. 한-칠레 FTA 발효성과

○ 한국의 대 칠레 수출품목 시장 점유율

구분		수출액(백만불)		수입시장 점유율(%)	
		2003	2010	2003	2010
FTA 수혜 품목	석유류	65	1,232	15.2	27.0
	승용차	107	896	16.1	32.9
	철강	7	81	10.8	24.5
	전화기	1	55	1.3	3.8
비수혜 품목	세탁기	16	18	48.5	20.9
	냉장고	5	11	8.2	6.1

13. 멕시코 시장에서의 한국제품 동향

□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4%에 불과[관세 30%]

◦ 멕시코 내 수입차 비중[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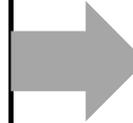
:미국 40.4% > 일본31.8% > EU 20.4% > 한국4%

* 멕시코는 미국[94.1월], EU[00.7월], 일본[05.4월]과 FTA 발효

□ 금호타이어 CASE[2004년]

2004.1.1

자국산업보호로 인해
멕시코와 FTA 맺지 않은
나라의 타이어 관세 인상
기존 23% → 25~90%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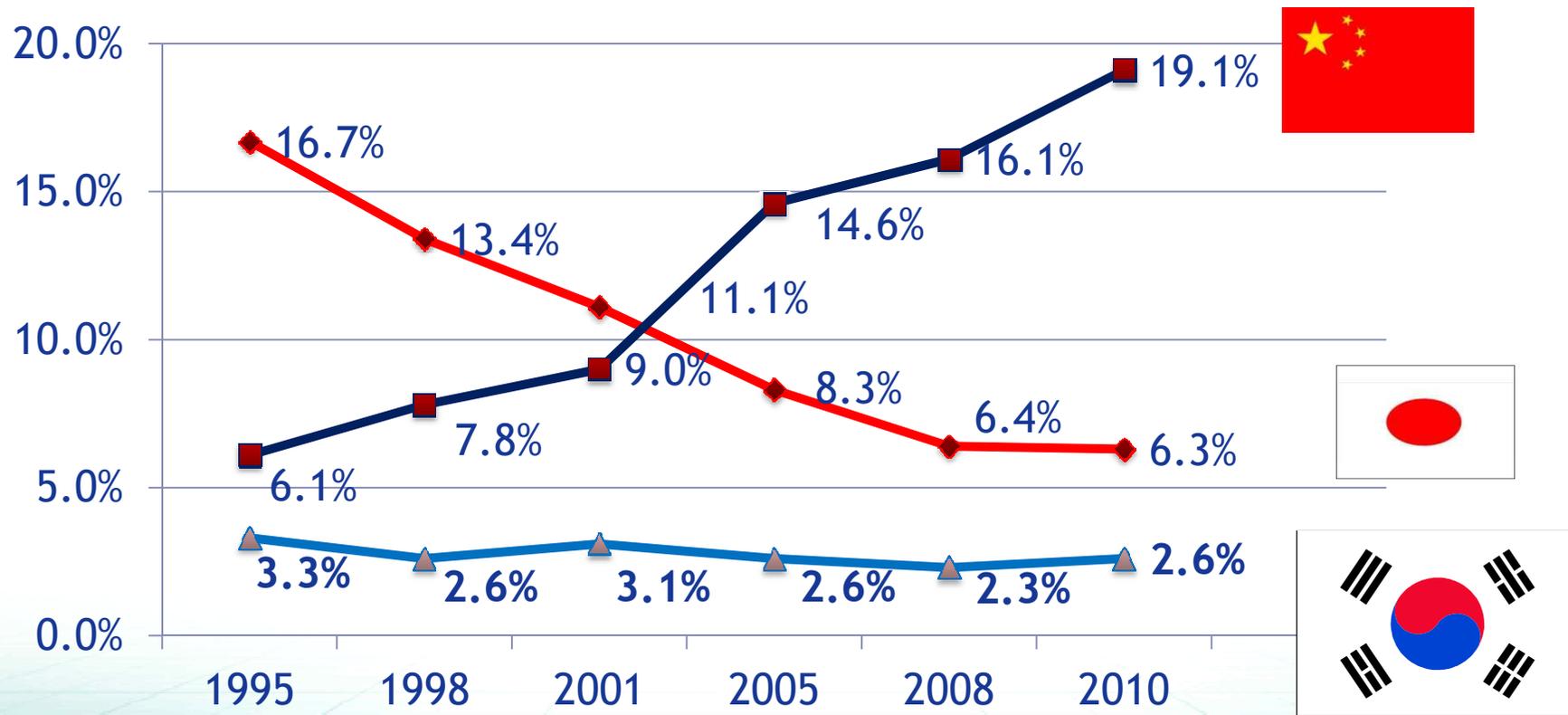


멕시코. 일본FTA 체결후,
우리의 멕시코수출 **전면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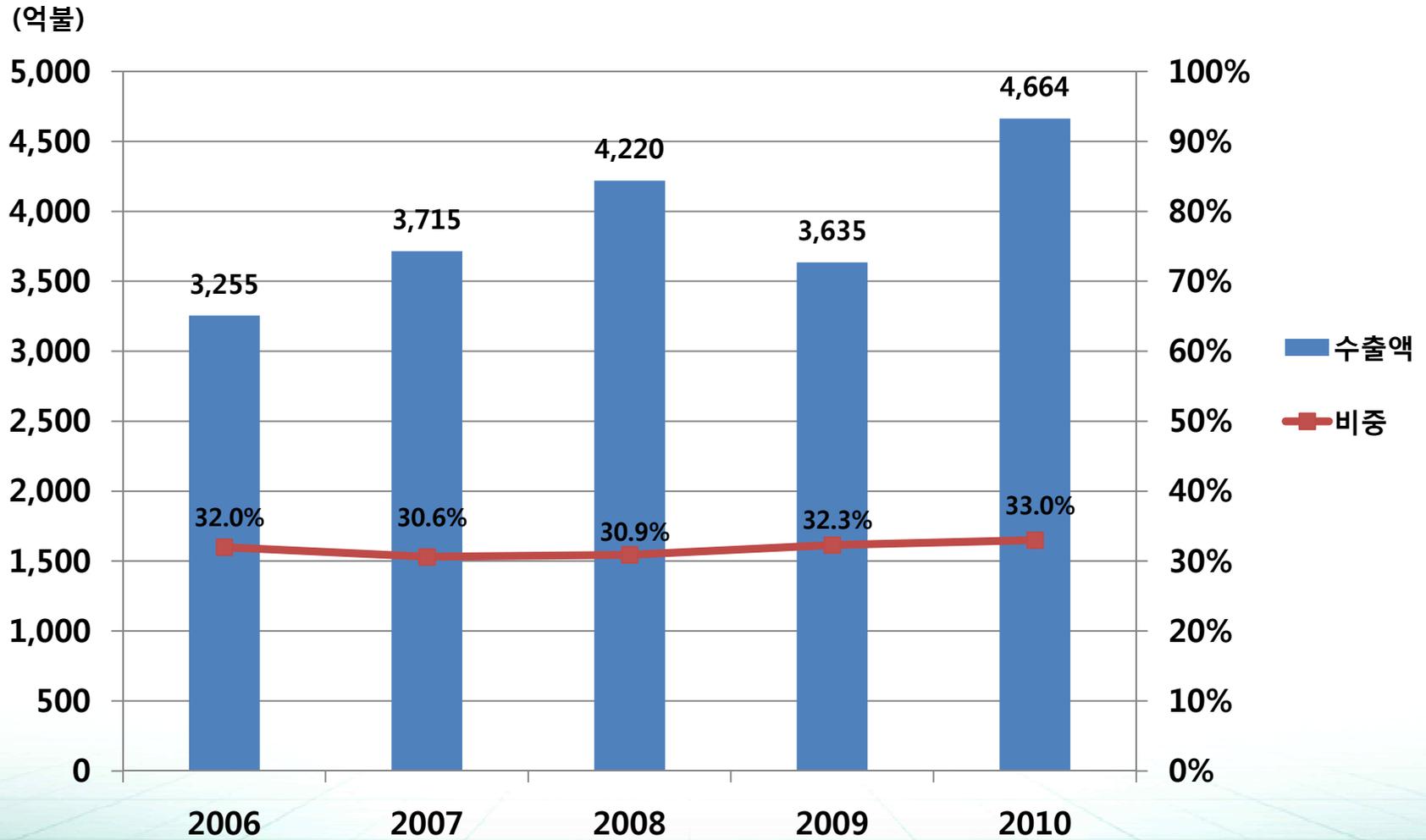
[평균 관세율 51% 부과]

14.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

-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 상대적 경쟁여건 개선



15.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16. 중소기업의 FTA 활용

● [한칠레 FTA] 칠레 진출 우리 신규기업 수출액 비중 [04~'09 누계]

대기업 17% (6.7억불, 95개) < 중소기업 83% (32억불, 2,330개)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10)

● [KOTRA] 한미 FTA 발효 시 중소기업 10대 대미수출 유망업종 발표(2010.10.12)

⇒ 브레이크 패드,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볼트/너트,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펌프, 볼베어링, 터치스크린모니터,
에폭산수지, 리튬일차전지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제도

- ⇒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주요 광역시도에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지원
- ⇒ FTA 닥터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17.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생산업체 현황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은 5,000 여개 업체, 3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담당**
 - 2010년 1차 납품업체수는 899개(이중 87%가 중소기업)
- **우리 부품업체의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 제공 전망**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억불): (07)28.4 → (08)27.0 → (09)21.3 → **(10)41.2** → **(11)50.2**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철폐 (2.5~12.5%)

< 미국 자동차 분야 관세율 및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승용차	볼트, 너트	전기배선 장치	폴리	브레이크 패드	가스킷, 씰	덕타일 주품제품	냉간단조 부품	공조 부품
관세	2.5% 4년 유지, 5년차 철폐	5.9~12.5%	3.5%	2.8%	2.5%	2.5%	0~2.9%	0~2.5%	0~2.5%
수출액 (2010)	6,615	122	2	174	270	28	5	779	11

18. 섬유부문 중소기업 생산업체 현황

-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42천개 업체에서 29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담당
 - ※ 중소기업 비율: 사업체수(99.9%), 종업원수(94.2%)
- '05년 섬유쿼터제 폐지이후 중국(19.8%), 터키(6.4%), 인도(3.9%) 등과의 경쟁심화로 시장점유율은 지속 감소

<미국 섬유시장 한국점유추이>

(단위:백만 미불)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대한국수입	1,666	1,325	1,120	806	857
비중(%)	1.8	1.4	1.2	1.0	0.9

-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대미 수출증대 전망: 섬유류 평균 13.1%(최대32%) 관세폐지
 - ※ 미국의 고관세 철폐로 연평균 수출 1억달러 및 무역수지 흑자가 8천만 달러 증가 예상 (2011.8.5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
- 고용창출: 신규투자, 고부가 섬유개발로 인한 신규 및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 ※ 한미, 한EU FTA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한국 리턴 검토 증가(2011.8 섬산연)

19. 한미 FTA 원산지 검증

-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상품이 FTA 체결 상대국의 물품임을 확인 필요 ⇒ 원산지증명서

⇒ FTA특혜관세 혜택을 제3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증명의 형태**

- 자율증명 :수출자가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 · 서명(칠레, EFTA, 미국, EU)
- 기관증명 :정부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협정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싱가포르, ASEAN, 인도)

 따라서, 원산지 활용 시스템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

20. 원산지 검증 웹사이트 [관세청]



FTA 포털
자유무역협정 열린 청바리당

홈 | 사이트맵

통합검색 : Search >

FTA일반

수출할용

수입할용

원산지검증

자료실

전체메뉴

| 원산지검증이란? | FTA별 원산지검증방법 | 원산지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 원산지검증 이후조치 |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 | 협정관세 적용제한 | 협정관세 적용보류 |

공지사항

MORE

- (서울세관) 제5차 수출기업 한-미 FTA 활용전략 ... N [2012/02/10]
- EU, 인도 자동차양허세율표 공지 N [2012/02/09]
- (서울세관) 서울세관과 수출시 구청이 ... N [2012/02/01]
- (서울세관) 제4차 수출기업 한-미 ... [2012/01/27]
-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응용자동 ... [2012/01/25]

Popup zone



인증수출자 변호체계 개편 안내

QUICK MENU

-  FTA 한눈에 보기
-  협정문DB
-  자동차산업 분야 HS가이드북
-  FTA 컨설팅신청
-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  FTA-PASS 원산지관리 시스템

한-EU FTA
냉동농치 사용수량 및 잔여수량 안내

기간 : 2011.07.01 ~ 2012.06.30
기준일 : 2012.02.13
TRQ수량(총수량) : 800 M/T
[사용수량] : 85.4 M/T [잔여수량] : 714.6 M/T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검증
세관원산지결정기준
세관원산지결정기준

합정법 FTA세율, 상호대응세율,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상세보기 >

21. 원산지 검증 웹사이트 [관세청]



수출시 세율 EXPORT
수입시 세율 IMPORT

원산지 결정기준
COUNTRY

원산지 결정기준



제 1부 산 등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 2부 식물성 생산품



제 3부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품



제 5부 광물성 생산품



수출시 세율, 수입시 세율 원산지결정 여부를 왼쪽 상단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보기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인도
페루
HS 기준안내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HS부호 / 품목명: 검색

HS부호 6단위별로 원산지 기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S Code	분류	품목명	영문품목명	PSR품명	원산지기준
940120	01	차량용의 의자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차량용의 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9401,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FTA포털에서 제공하는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FTA 협정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3 -

22. 원산지 검증 웹사이트 [무역협회]

KITA.NET 무역통계 무역정보 무역상담/실무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메일 첨부 회원사









수출
FTA
상대국의 관세율

수입
FTA
한국의 관세율

시뮬레이션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기준
품목/FTA협정별 비교

FTA 뉴스 최신 보고서 공지사항 MORE >

- * 수출 20주년 베트남과 FTA 등 건협 관 2012.02.14
- * 이 대륙엔 "한-라키 FTA, 새 협력 시 2012.02.07
- * 2012년 한미 경제협력, 새로운 기회 2012.02.06
- * 선형건업직종들 지원 대폭 확대 한 2012.02.01
- * 자정부·합창, 한·미 FTA 활용 세미 2012.01.31

Quick Link



FTA 용어



길라잡이



FTA School



비즈니스 모델



예문신고

FTA 체결 현황

한국의 FTA 체결현황 보기 >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보기 >

<< 이 DB 및 서비스의 평가를 귀하에게 맡깁니다. >> 평가하기







정부기관

유관기관

해외기관

+ FTA전문가

+ 사이트맵

23. 원산지 검증 웹사이트 [무역협회]



원산지 Rules of Origin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제도

시물레이션

HSK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전체국가보기

개별국가보기

ASEAN

싱가포르

칠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

인도

EU

페루

HS코드 / 품목명 조회

940120

검색

HS검색

검색 HELP

94	품목명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CUSHIONS, LAMPS & LIGHTING FITTINGS PREFABRICATED BUILDINGS
9401	품목명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Se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4.02), whether or not convertible into beds, and parts thereof.
940120	품목명	차량용의 의자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하위품목 상세보기 >	원산지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관세율

품목별 FTA특혜관세

시물레이션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

메뉴얼

사이트 이용 안내